

#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93호 2021. 4. 8.(목)

| 선<br>람 | 기 관 의 장 |
|--------|---------|
|        |         |

## 공 고

○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542호)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예 천 군 수

## 1. 개정 이유

박물관 운영에 관한 지원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관람료 무료화 및 교육·홍보와 관련된 경비 지원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관람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외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 (안 제4조의2 제1항 제2호)

- 홍보 및 교육을 위한 기념품 등의 제작 지원 (안 제4조의2 제2항)
- 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안 제7조)
- 관람료 면제에 관한 조항(안 제8조) 삭제
- 박물관 관람료에 관한 별표(별표 1) 삭제

###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예천군 문화 관광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 054-650-8314, 팩스 : 054-650-8319
- 전자우편 : kwbr0928@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 이유

박물관 운영에 관한 지원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관람료 무료화 및 교육·홍보와 관련된 경비 지원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관람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외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 (안 제4조의2 제1항 제2호)
- 홍보 및 교육을 위한 기념품 등의 제작 지원 (안 제4조의2 제2항)
- 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안 제7조)
- 관람료 면제에 관한 조항(안 제8조) 삭제
- 박물관 관람료에 관한 별표(별표 1) 삭제

###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 제12조

○ 「평생교육법」 제16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33,500천원)

라. 규제심사 : 기획감사실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4월 중 입법예고 실시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

##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박물관 교육사업”을 “박물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외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일비, 식비, 차량지원비, 타 시·군 아카데미 참여 교육비 등)

② 박물관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박물관 유관기관 관계자 및 방문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간행물 및 기념품, 체험물품 등을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4조의2(경비 지원 등) 군수는 <u>박물관 교육사업의 활성화</u>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의2(경비 지원 등) ① ---<br><u>박물관</u> -----<br>-----<br>-----.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u>박물관 교육 관련 국내·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u>                                                  | 2. <u>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외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일비, 식비, 차량지원비, 타 시·군 아카데미 참여 교육비 등)</u>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② <u>박물관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박물관 유관기관 관계자 및 방문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간행물 및 기념품, 체험물품 등을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u> |
| 제7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u>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                                 | 제7조(관람료) <u>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u>                                                                   |
| ② <u>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관람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다.</u>                                           |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  
자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는 군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  
다.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 주최 또는 주관하여 전시  
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가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④ 관람권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른관람권(만19세 이상~만  
64세 이하인 사람이 구매하는  
관람권을 말한다)

2. 청소년관람권(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이 구매하  
는 관람권을 말한다)

3. 어린이관람권(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이 구매하  
는 관람권을 말한다)

4. 단체관람권(20명 이상이 입  
장할 시 구매하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삭 제>

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4.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포함)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6. 만6세 이하 영유아 및 만65세 이상 노인

7. 유물을 기증하거나 위탁관리하는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와 그 가족

8.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박물관 행사에 초청받은 자

9.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0. 「다복 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참고 1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박물관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안 제4조의2 제1항 제2호)

박물관 홍보·교육을 위한 간행물 및 홍보용품 제작 (안 제4조의2 제2항)

####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3. 미첨부 사유

박물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나라사랑 아카데미(강의 및 현장답사 등)운영에 드는 준비물 및 부대비용과 박물관 홍보용품 등에 필요한 예산이 33,500천원으로 예상됨

#### 4. 작성자

문화관광과 지방행정사무관 장덕철 (054-650-6390)

**참고 3**

**별표 1(관람료)**

**관람료(제7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 원)

| 구분        | 개 인                                                                                                                                                                                                                                                                                                                                                                                                 |       |       | 단 체(20인이상) |       |     |
|-----------|-----------------------------------------------------------------------------------------------------------------------------------------------------------------------------------------------------------------------------------------------------------------------------------------------------------------------------------------------------------------------------------------------------|-------|-------|------------|-------|-----|
|           | 어 른                                                                                                                                                                                                                                                                                                                                                                                                 | 청소년   | 어린이   | 어 른        | 청소년   | 어린이 |
| 일 반       | 2,000                                                                                                                                                                                                                                                                                                                                                                                               | 1,500 | 1,000 | 1,500      | 1,000 | 500 |
| 예천군민      | 1,500                                                                                                                                                                                                                                                                                                                                                                                               | 1,000 | 500   | 적용하지 아니함   |       |     |
| 관람료<br>면제 | <div>•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div> <div>• 국가유공자</div> <div>•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div> <div>• 하사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포함)</div> <div>•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div> <div>• 만6세 이하 영유아 및 만65세 이상 노인</div> <div>• 유물 기증·위탁관리자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와 그 가족</div> <div>• 예천군이 박물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받은 자</div> <div>•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및 관광안내사</div> <div>•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원</div> |       |       |            |       |     |
| 비 고       | <div>• 어 른 : 만19세 이상 ~ 만64세 이하</div> <div>• 청소년 :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div> <div>• 어린이 : 만7세 이상 ~ 만12세 이하</div> <div>• 예천군민 : 주민등록을 예천군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 신분증을 소지한 자</div>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문 화 관 광 과 |          |
|-----------|----------|
| 연 락 처     | 650-8314 |